

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6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를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2025. 5. 16. ~ 2030. 5. 15.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소요예산 : 1,890,252천원('25년 예산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
- ※ 2025년 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5. 1. 17.)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
○ 추진 필요성

-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,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,
-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, 신 노년층 증가에 따라 이들에 맞는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.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3.5.1. ~ 2006.4.30.(3년,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유지재단)
- 2차 : 2006.5.1. ~ 2009.4.30.(3년,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)
- 3차 : 2009.5.1. ~ 2012.5.15.(3년,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)
- 4차 : 2012.5.16. ~ 2015.5.15.(3년,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)
- 5차 : 2015.5.16. ~ 2020.5.15.(5년,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)
- 6차 : 2020.5.16. ~ 2025.5.15.(5년,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제5항,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3항 및 제4항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박성빈(☎ 2133-7418)